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

제출연월일 : 2011. 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다양한 분야의 소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수임사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

-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군이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위임하는 사건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 (안 제4조제2항)

나.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시기 조정

- 월별로 지급하던 고문변호사 수당(월30만원)을 청구에 의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지급 (안 제5조제3항)

다. 사건실적부 비치 기록유지

- 법률자문 및 소송의뢰 사건에 대한 사건기록부를 비치 월별로 정리 (안 제6조)

라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붙임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다. 관계부서협의 : 해당없음
라.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략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”를 “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률사항이라 함은”을 “법률사항 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위촉) 평창군 고문변호사 (이하 “고문변호사“라 한다)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평창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가 위촉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고문변호사는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군 또는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중 수임하는 쟁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한다.

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.

제4조의2제2항 중 “각호의 1”를 “각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, “위・해촉일”을 위촉・해촉일“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사건 실적부 비치)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의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,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	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
제1조(목적) 평창군수의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 고문변호사(이하“고문 변호사” 라 한다)를 둔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법률사항이라 함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, 행정심판,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 법률사항 이란 ----------.
제3조(위촉)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	제3조(위촉) 평창군 고문변호사 (이하 “고문변호사“라 한다)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평창군수(이하“군수” 라 한다)가 위촉한다.
②고문변호사로 위촉할 때에는 군수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.	<삭 제>
제4조(직무) ① (생 략) ②고문변호사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군이 제기 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 한다. ③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 하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.	제4조(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고문변호사는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군 또는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중 수임하는 쟁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한다.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위촉기간) ① (생략) ②고문변호사가 다음 **각호의 1**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.- 1. ~ 2. (생략) 3. **제4조의 규정에 의한**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	제4조의2(위촉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. ② ----------**각 호의 어느 하나**에 -----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**제4조에 따른** ----------
제5조(수당)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**범위안에서** 매월 15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우 **위·해촉일**이 월 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본다. ② (생략) **<신 설>**	제5조(수당) ① ----------**범위에서** ---------- **위촉·해촉일**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. **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**
<신 설>	**제6조(사건 실적부 비치)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의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,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**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**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**

관계법령 발췌

□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운용규정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에도 적용된다. 다만, 소속기관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]

제4조 (위촉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·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중 11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위촉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 (수당) 고문변호사에 대해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